

이사회규정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3 조(권한) ①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,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②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.

제 4 조(구성) 이사회는 이사 전원(사외이사 기타 비상근이사 포함)으로 구성한다.

제 5 조(의장)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

제 6 조 (회의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월 1 회 개최하되,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③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 7 조(소집권자) ①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.

②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 8 조(소집절차) ①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②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 1 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.

제 9 조(결의방법) ①이사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.

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이사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④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 10 조(부의사항) ①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(1) 주주총회의 소집

(2) 영업보고서의 승인

- (3) 재무제표의 승인
- (4) 정관의 변경
- (5) 자본의 감소
- (6) 회사의 해산, 합병, 분할합병, 회사의 계속
- (7) 주식의 소각
- (8)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
- (9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,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,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
- (10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- (11) 주식의 액면미달발행
- (12)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
- (13) 주식배당 결정
- (14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(15) 이사.감사의 보수
- (16)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

2. 경영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(2) 신규 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
- (3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4) 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이사, 상무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(5) 공동대표의 결정
- (6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(7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

(8)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.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.

(9)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

(10)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

(11) 급여체계, 상여 및 후생제도

(12)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

(13) 중요한 사규, 사칙의 규정 및 개폐

(14) 지점, 공장, 사무소, 사업장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

3. 재무에 관한 사항

(1) 투자에 관한 사항

(2) 중요한 계약의 체결

(3)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

(4) 결손의 처분

(5)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

(6) 신주의 발행

(7) 사채의 모집

(8) 준비금의 자본전입

(9) 전환사채의 발행

(10)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

(11) 다액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

(12) 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, 질권의 설정

4. 이사에 관한 사항

(1)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승인

(2) 타 회사의 임원 겸임

5. 기 타

(1) 중요한 소송의 제기

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
(3)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,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
2.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

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
제 11 조(위임) ①이사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의 결의로서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 및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.

②대표이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로 하여금 그 업무집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③대표이사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위임 받아 처리한 사항은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사후승인) ①제 10 조의 부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조치를 한 사항은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3 조(이사회 내 위원회) ①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
③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

④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

⑤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 14 조(감사의 출석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 14 조의 2(관계인의 출석)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제 14 조의 3(외부전문가 지원) 이사회 또는 각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15 조(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) 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,

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,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제 1 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제 16 조(의사록) ①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③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④회사는 제 3 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.

제 17 조(간사) ①이사회에 간사를 둔다.

②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.

부 칙

제 1 조 이 규정은 1993 년 9 월 1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

제 2 조 이 규정은 2003 년 5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 3 조 이 규정은 2005 년 4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 4 조 이 규정은 2006 년 11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 5 조 이 규정은 2011 년 5 월 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 6 조 이 규정은 2018 년 12 월 31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 7 조 이 규정은 2024 년 12 월 27 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